

문서번호	BSKS-3-1-0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/6

2011.12.30.제정 2012.09.21.개정 2013.06.26.개정 2018.01.31.개정 2019.12.10.개정 2020.03.1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2.28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08.30.개정 소판부서 : 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산업체 겸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구분)** 겸임교원의 직위는 겸임교수, 겸임부교수, 겸임조교수로 구분한다<개정 2012.05.25., 2012.09.21.>
- 제3조(자격)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와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6조 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교수(교원)자격기준을 충족하고,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뜻한다.
 - 1. 국가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은 자
 - 2. 임용기간동안 계속하여 주당 3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.
 - 3.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 - 4.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
 - 5.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(유사경력이 3년 이상)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(단,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)
 - 6.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
 - 7.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
 - 8. 인정 제외자
 - 가.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자
 - 나.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 (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)



문서번호	BSKS-3-1-0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/6

다.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,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·전임연구원라. 타 대학 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

제4조(임용 계약기간)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.

- 1 .삭제 <2019.12.10.>
- 2. 삭제 <개정 2012.09.21.>, <2019.12.10.>
- 3. 삭제 <개정 2012.09.21.>, <2019.12.10.>
- 4. 삭제 <2012.09.21.>

제5조(임용방법 및 절차) ① 겸임교원의 임용방법은 공개채용 또는 소속 계열(학과)장의 추천 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.

- ② 겸임교원의 신규임용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2.09.21.>
- ③ 제1항 후단의 경우 소속 계열(학과)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[별표1] "겸임교원 신규임용 추천서" 첨부)
- ④ 겸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8.01.31. 2022.02.28., 2022.08.30.>

제6조(임용인원의 제한) 삭제 <2020.03.13.>

제7조(숭진임용시기) 겸임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자로 연1회 시행한다.

제8조(승진소요연수) 직위별 승진 최소 연수는 다음과 같다

- 1. 겸임부교수에서 겸임교수: 6년
- 2. 겸임조교수에서 겸임부교수 : 6년 <개정 2020.03.13.>
- 3. 삭제 <2012.09.21.>

제9조(재계약 임용 절차) ① 전 임용기간중의 교수능력이 우수한 자는 해당교과목에 대한 실무지식 등의 계속적인 강의가 필요할 경우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- ② 재계약 임용 시기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,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- ③ 총장은 제4조에 의한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지식의 계속적인 강의 필요성 여부를 해당 겸임교원의 소속 계열(학과)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임용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임용여부를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의한 소속 계열(학과)장의 추천서에는 소속 계열(학과)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([별표2] "겸임교원 재임용 추천서" 첨부)
- ⑤ 제3항의 의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에는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강의료) 겸임교원의 강의료는 본교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0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3/6

제10조의2(강의보조금) ① 겸임교원에게는 강의가 있는 달에 한하여 강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13.>

- 1. 겸임조교수 : 매월 100,000원 이하 <개정 2020.03.13.>
- 2. 겪임부교수. 겪임교수 : 매월 200.000원 이하 <개정 2020.03.13.>
- 3. 강의보조금은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3.13.>
- ② 강의보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03.13.>
 - 1. 주당 6시간 이상 강의를 한 경우 : 전항에 명시된 월정 금액 전액 지급
 - 2. 주당 6시간 미만 강의를 한 경우 : 전항에 명시된 월정 금액 × 주당 강의 시간 / 6
-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학과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- ④ 3항의 경우 대상자 선정은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<본조 신설 2013.06.26.>

제11조(임무) 겸임교원의 임무는 산업현장의 실무, 실기 등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다.

[별표 1] 겸임교원 신규임용 추천서 [별표 2] 겸임교원 재임용 추천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문서번호	BSKS-3-1-0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4/6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 2020학년도 1학기 신규 겸임교원부터 적용하며, 기존 겸임교원은 재임용 계약 이후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소급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0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5/6

[별표1] 겸임교원 신규임용 추천서

겸임교원 신규임용 추천서

성 명	한 등	<u></u>		한 자						
주민등록 번 호		_	만 세	e-mail	@					
<u> </u>	주 소									
연락처	자 택	<u></u>		직장명				Sciii	cm×4cm>	
	휴대전	화		직장전화						
	구분	학교명	학과(전공) 세-	쿠전공	ブ] 간	학위취득일	학위명	
	고교									
학 력	학사									
	석사									
	박사									
	기 관 명 재직		기간]간 담당업무			직급 및 직위			
	려									
경 력										
0 1										
추천인	()과/계열 직급: 성명:									
추천인										
의 견										
학과 고스	성명	(1 성명				성명		P	
교수 협조	성명	(한 성명			P	성명			

위와 같이 겸임교원 신규임용을 추천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/계열장:

(FI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3-1-0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6/6

[별표2] 겸임교원 재임용 추천서

겸임교원 재임용 추천서

소 속: 과(계열)

생년월일: . . .(만 세)

성 명:

20**. **. **.

소속 교원 000 인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